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광주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고단38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업무방해,협박,모욕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3고단38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협박, 모욕

피고인 A

검사 조규웅(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정부보조금 등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과등)

가. 피고인 2013. 8. 2. 06: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악세사리 매장에서 술에 취한 채 '100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고 위 매장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 15:0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세 금도 내지 않으면서 돈을 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노점용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수리비 264,000원이 들도록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약국 앞에서 자신이 타고 다니는 휠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체어에 있던 짐을 위 약국 출입문 앞에 펼쳐 놓는 방법으로 위 약국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커피, 율무차, 물 등을 가져다 달라는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L약 국"이라고 계속해서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4. 02:0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o 운영의 노점 음식점에 찾아가서 술에 취한 채 '오뎅국물 등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조금 밖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씨발 년아 여기서 돈 많이 버냐, 씨발년 니가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간장통을 집어 던져 음식물에 뿌리고, 오뎅 국물을 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노점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8.2. 06:27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O" 매장에 찾아가서 술에 취한 채 평소 자신이 맘에 드는 아르바이트생을 해고 했다는 이유로 위 매장 앞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플라스틱 박스들을 매장 유리창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P의 매장 영업 준비업무를 방해하였다.

# 3. 모욕

피고인은 2013. 8. 14. 09:50경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광주 북구 G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정자에서 C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Q(5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개상 놈아, 애기를 잘 키워야지 왜 때리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Q을 모욕하였다.

## 4. 협박

피고인은 2013. 8. 14. 14:0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부근 공원 앞길에서 장사하고 있던 피해자 H(68세)을 찾아간 다음 '위 1의 나항의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수분 동안 머물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인 들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여기서 장사 하는가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1. 증인 E, H, R, S, P,N, C, K의 각 법정진술
- 1. 사건현장 사진(F),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인격장애 성향과 음주에 의존하는 성향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정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인격장애 성향과 음주에 의존하는 등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C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3. 8. 14. 09:50경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광주 북구 G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정자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여, 77세)에게 "씹할년아, 이년 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4.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고소의 취소로 볼 수 있는 나, 결국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 판사 장재용